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3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. 10. 19. 신종갑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. 10. 19.
- 다. 상정일자 : 제22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18. 10. 30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최은하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 거주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준비 인생이모작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지원사업 및 대상과 재정지원 등(안 제4조~제5조)
- 4)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시설의 위탁(안 제6조~제7조)
- 5) 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 가능 사무인지 여부

- ‘노후준비 지원법’ 제2조(정의)에 “노후준비”란 “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·질병·무위·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”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.(근거:별첨1)
- 한편, ‘노후준비 지원법’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(근거:별첨1)
- 또한,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 제15조의2(노후설계)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(근거:별첨2)
- 아울러, 이건 조례안은 50세이상 65세 미만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호 “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”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.
- 따라서, 이건 조례안의 사무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므로 이건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나.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사조례 유무 : 121개 지자체 제정

- 서울시 25개 구(區)중에는 동작구가 2015.11.12일 제정하는 등 총 7개 구(區)가 우리구 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
- 또한, 지방에는 부천시 2015.1.12일 “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조례”를 제정하는 등 총 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.

다. 조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 적정여부 : 적정함

- 이 조례는 본칙 9개 조항과 부칙 등으로 조문화 하였으며, 조문의 단어 및 문장 등이 조례로서의 구성체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또한,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, 재정지원,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, 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문 내용을 상위 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등과 비교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한편, 이견 조례안 제8조(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)에서 관련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기존의 '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'에 의한 "지역사회 보장 협의체"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복지관련 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최소화 한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라. 시설의 위탁·운영의 적합성 : 적합함

- 이견 조례안 제7조(시설의 위탁)에서 시설을 위탁할 경우 "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"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향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탁자 선정 및 관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마.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 여부 : 실현 가능함

- 집행기관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2018년에 4500백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고, 2019년에는 증액하여 1억91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- 아울러, 이견 조례안이 의원발의 제정 조례임을 고려하여 법령상, 예산상, 행정상 등의 측면에서 시행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집행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조례 제정후 집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바. 검토 종합의견

- 위와 같이 이견 조례안이 조례제정 가능 사무인지 여부,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조례 유무여부, 조문의 구성체계 및 내용 등 적정여부, 시설의 위탁·운영의 적합성,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아울러, 우리구 장년층 주민에게 은퇴 전후에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이견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구청장은 조례 제정후 상황의 변경이나 사업변경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